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 583 호 2017. 6. 2(금)**

## 규 칙

남해군규칙 제1122호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 고 시

제2017 - 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2  
 제2017 - 52호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사항 공고 ..... 3  
 제2017 - 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5  
 제2017 - 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6

## 공 고

제2017 - 500호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제2017 - 519호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  
 제2017 - 520호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7  
 제2017 - 521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32  
 제2017 - 522호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37  
 제2017 - 532호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9  
 제2017 - 533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 64  
 제2017 - 534호 『부윤천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67  
 제2017 - 550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 71  
 제2017 - 579호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5  
 제2017 - 583호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1  
 제2017 - 58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 106

## 알 림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 - 10호 보상계획공고 ..... 110

회 램									
-----	--	--	--	--	--	--	--	--	--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22호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규칙 제1107호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7 - 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금양천(지방하천)
2. 성 명 : 조운O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4. 점용목적 : 진입로 설치
5. 점용위치 :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182-42번지
6. 점용면적 : 27㎡
7. 점용기간 : 2017. 5. 19. ~ 2017. 12. 31.

남해군 고시 제2017 - 52호

###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사항 공고

유해성 적조발생에 대비한 사전준비태세 확립과 적조피해 발생전 해상가두리시설 안전지대 이동을 통한 어업피해 최소화 도모를 위하여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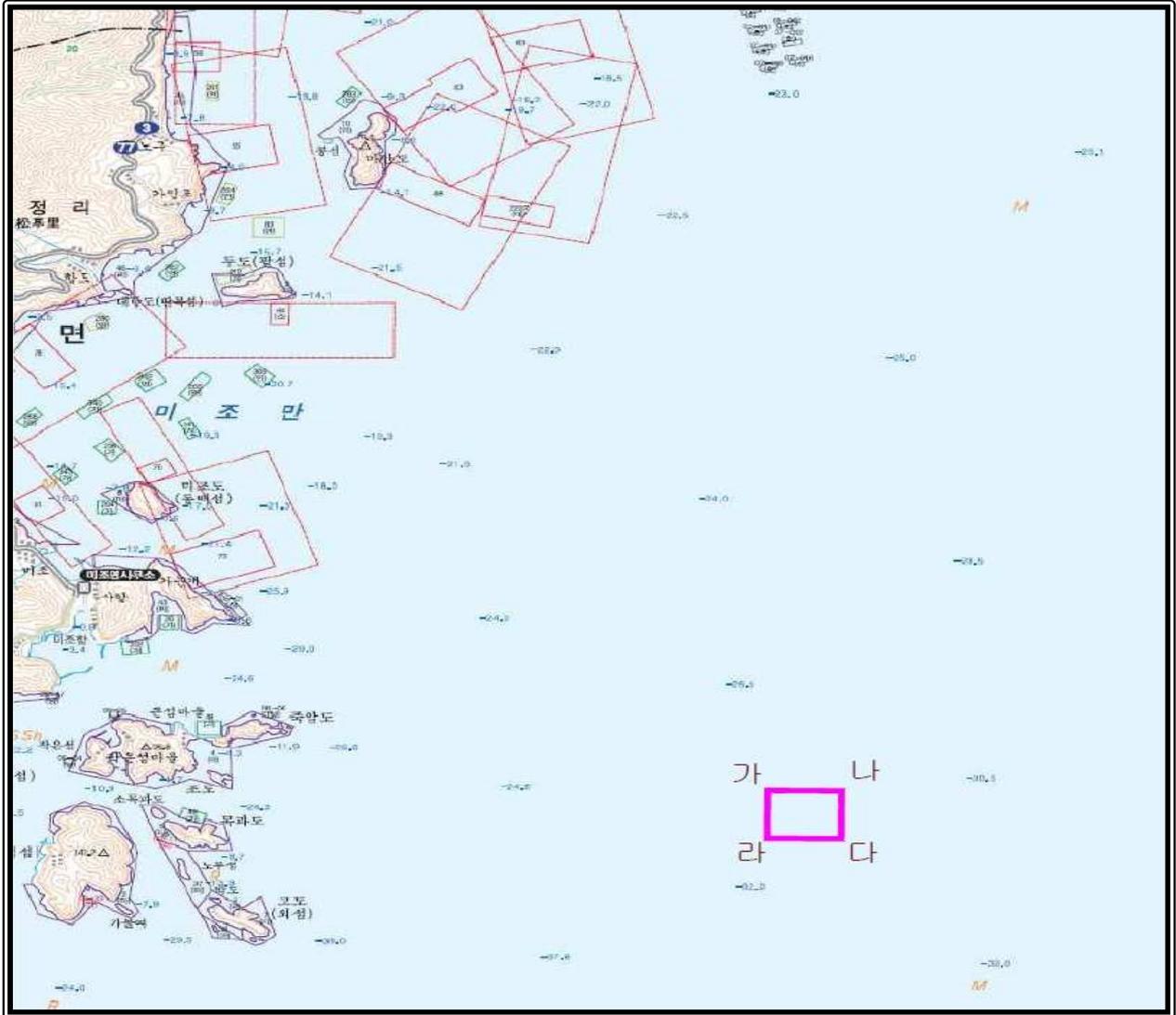
남 해 군 수

###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현황

지정목적	면적 (ha)	지정기간	위치	좌표(WGS) 및 구역 (위도,경도)	지정받은자
적조발생시 해상가두리 시설 대피장	30	2017.5.24~ 2017.10.31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미조도 부근	가.34-41-37.150, 128-06-28.923 나.34-41-37.150 128-06-52.494 다.34-41-20.925 128-06-52.494 라.34-41-20.925 128-06-28.923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구역】	남해군수 (해양수산과장)

붙임 : 대피장 지정 해역도 1부

## 해상가두리 적조대피장 해역도



상기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구역

구분	경위도(WGS)		기점간 거리(m)		비 고
	위도(N)	경도(E)	기점(구간)	거리(m)	
가	34-41-37.150	128-06-28.923	가-나	600	
나	34-41-37.150	128-06-52.494	나-다	500	
다	34-41-20.925	128-06-52.494	다-라	600	
라	34-41-20.925	128-06-28.923	라-가	500	

남해군 고시 제2017 - 54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봉천)
2. 성 명 : 남해군수(건설교통과장)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 점용목적 : 교량재가설
5. 점용위치 :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491번지
6. 점용면적 : 308㎡
7. 점용기간 : 2017. 5. 4. ~ 영구

남해군 고시 제2017 - 55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입현천)
2. 성 명 : 남해군수(건설교통과장)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4. 점용목적 : 교량재가설
5. 점용위치 :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1623-1번지
6. 점용면적 : 162㎡
7. 점용기간 : 2017. 5. 24.~영구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7 - 500호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2. 개정이유

상위 법령과 도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
  -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제1조, 제2조,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해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연락처 : 전화055-860-3315, 팩스055-860-3708, e-mail : [n0113125@korea.kr](mailto:n0113125@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도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2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 중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을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66조제1항”을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제30조제3항”을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u>10퍼센트</u>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u>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u></p>	<p>제4조(점용료의 조정) ----- ----- ----- <u>10분의10</u> ----- ---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u>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u></p>

관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519호

##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6일

### 남 해 군 수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남해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추가.(안 제2조)
- 나.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예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남해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

####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 및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참조 재무과장)
- 전화 : 055-860-3173, FAX 055-860-370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세 기본 조례” 를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로 한다.

###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남해군 군세(이하 “군세” 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 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남해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남해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남해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남해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남해군세 기본조례」 제5조” 를 “「남해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520호

##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 남 해 군 수

1. 자치 법규명 :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2.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권고에 따라 간결하고 명료하게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변경 :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나. 목적(안 제1조),

다. 정의(안 제2조)

라.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안 제3조)

마. 각종대장 등의 작성·비치(안 제4조)

바. 서류의 송달(안 제5조)

사.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안 제6조)

아. 군세환급금의 처리(안 제7조)

자. 환급금 지급대상자(안 제8조)

차. 환급금의 충당(안 제9조)

카. 납세담보의 범위(안 제10조)

파.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73,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해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을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남해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군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남해군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2."징수부서의 장"이란 남해군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3. "수납기관"이란 남해군 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남해군 군세 기본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남해군 군세(이하 “군세” 라 한다)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

서에 그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 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해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해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을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법73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22조” 로 한다.

② 「남해군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 를 “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 를 “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 를 “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해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지 제1호서식]

○○○ 일반(등기)우편 송달부

일련 번호	세목	연도 기분	과세 번호	납세자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세액	주소	반송 사유

\*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 [별지 제3호서식]

###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구분	세목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송달지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인수자
			성명	주소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 등 서류명을 기재함

■ [별지 제4호서식]

**년도      기분      세(서류명 기재)      송달불능부**

과세 번호	납세의무자 주소		1차송달		재송달			공시 송달 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반송일	송달지	반송사유	반송일	

■ [별지 제5호서식]

###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결 재	담당자	팀장	과장	부군수

####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군세에 병기·부과되는 도세는 구·군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세의무자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세액(본세)					취소· 경정사유
		성명	주소		세목	당초	취소	경정	비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

환급금 내역	연도/기분(월)	환급금액	합계	OO세	OO세	OO세	OO세
일련번호	연대납세의무자 주소					동의 (서명·날인)	비고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

결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인)
과장	지	방	세	환	급	(인)
	정	리	부	등	재	
담당	총	당	통	지	서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

세 입 항 목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	--	-------	-----

남해군 공고 제2017 - 521호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남해군세 기본조례」에서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조문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나.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선정근거 규정(안 제3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전화:055-860-3183, 팩스 055-860-3705, 이메일 [choi1760@korea.kr](mailto:choi1760@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 의 건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안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남해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채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채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채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522호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남해군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이관하여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각종 대장의 작성·비치 근거 규정(안 제4조)

나. 보통징수 및 신고납부에 따른 처리절차 규정(안 제5조~제7조)

다. 소인처리, 세입마감, 이월액 처리 등 수납절차에 대해 규정

(안 제8조~13조)

라. 결손처분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

(안 제14조~제16조)

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절차 등 규정(안 제17조)

4. 규칙 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우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전화 : 055-860-3183, 팩스 055-860-3705, 이메일 [choi1760@korea.kr](mailto:choi1760@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방문, 인터넷 등

# 의 건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규칙 제 호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남해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남해군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군수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

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남해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서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 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해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군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

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가 군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남해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1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제5조 제6조 제14조
2	징수(감액,결손) 결정액 통지부	제5조 제6조
3	세입(징수·감액·결손) 결정액 통지서	제5조
4	수납부	제5조 제6조 제8조
5	징수부	제5조 제6조
6	세목별 체납액 징수부	제9조 제13조
7	이월 체납액 정리부	제9조 제13조
8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제10조
9(갑)	결손처분표	제14조
9(을)	결손처분표	제14조
10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 심의요구서	제17조

(뒤 쪽)

내역서

구분 동	과세표준	세율	감액·결손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부과  
 신고납부  
 감액  
 결손

]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 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	세액			
		가산세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				
납세인원	(시·군) 구(시·군) 번길 외 명				
적요	년 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결손)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번호	통지 연월일	연도 납기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비고
담당자	담당	과 장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일: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목 [            ]세 /세목구분 [            ] /군 [            ]

세입연도	세목	세액			납세 인원	납부 기한	비고
		본세	가산금	계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수납구분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징수부

회계연도 : 년도 월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	연간 목표액	월까지 목표액	추경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지방세환급금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대년간	대월간
총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00세														
00세														

297mm X 210mm (백상지 80g/㎡)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세 목 별 체 납 액 정 리 부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부과일	최초기한일	가산기한일	○○세	○○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충액	체납액계
압류사항	(중)가산횟수	물건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계	가산금계

364mmX257mm(백상지 80g/㎡)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이월 체납액 정리부

○○년 도 ○ ○기(월)분

○ 음·면)

( ○

과세 번호	세목	본세	과년군 가산금 총계	중가산금												가산금 총누계	수납인	체납자 주소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물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57mm X 364mm(백상지 80g/m²)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과세물건		전화번호	
상호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 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담당	과장		
				(인)
<p style="text-align: center;"><b>주거 확인</b></p>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b>재산 확인</b></p>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b>생활상태 확인</b></p>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b>생활상태 확인</b></p>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 직급 성명</p>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군수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 남 해 군 공 보

2017년 6월 2일

제 583 호 (57)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 결 손 처 분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 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담당	과장	부군수	년 월 일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체납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연락처 :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납부 기한	체납액			결손처분여 부
		본세	가산금	계	

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남해군 공고 제2017 - 532호

###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 규정 삭제

3. 주요내용

가. (제17조)유료화장실에서의 편의용품 비치·제공 등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 연락처 : 전화055-860-3263, 팩스860-3707, e-mail : hellosejong@korea.kr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같은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같은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6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6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로 한다.

제9조 중 본문을 제외한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2.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의 소독은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본문 중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p>
<p>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p>	<p>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6조 ----- 1. ~ 3. (생략)</p>
<p>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규칙 제 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에 ----- ----- -----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p>	<p>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 -----</p>

야 한다.

1. 하루 세 차례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매년 한차례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제공
- 2.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신고금액 준수
-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 조치
-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준수 지시 사항 이행

-----.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2.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의 소독은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삭 제>

제17조(준수사항) -----

----- 법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삭 제>

[관 련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533호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부윤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부윤천 정비공사
- 출입구간 :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281-21번지 외 26필지(붙임 참조)

2. 출입기간 : 2017. 05. 22 ~ 사업 종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용지조서 1부. 끝.

편 입 용 지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총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명칭(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창선면 오용리	1281-21	대	20	20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김*균					
2	창선면 오용리	1281-1	전	740	8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김*우					
3	창선면 오용리	1343	구	14,151	5,857	국(농림축산식품부)						
4	창선면 오용리	1281-14	답	1,869	27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김*일					지분 2366분의 2007
5	창선면 오용리	1281-15	답	2,328	1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박*영					지분 2366분의 349
6	창선면 오용리	1281-29	답	1,130	367	경상남도 사천시 임내길	정*천					
7	창선면 오용리	1281-34	답	339	76	인천 남동구 구월동	정*진					
8	창선면 오용리	996-105	답	194	91		경상남도					
9	창선면 오용리	996-2	답	793	6		경상남도					
10	창선면 수신리	55-2	염	60,988	1,526	남해군 창선면 상족리	학교법인**학원					
11	창선면 수신리	55-73	염	942	683	남해군 창선면 상족리	학교법인**학원					
12	창선면 수신리	55-72	답	1,729	684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호					
13	창선면 수신리	550	구	5,940	1,442	국(농림축산식품부)						
14	창선면 수신리	55-67	답	1,785	66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장*자					
15	창선면 수신리	55-66	답	1,798	571	남해군 창선면 상족리	학교법인**학원					
16	창선면 수신리	55-61	답	1,144	26	서울 도봉구 번동	한*옥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김*신					지분 34분의6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성명	명칭(성명)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주소			주소	주소	
17	창선면 오룡리	996-8	답	694	5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장*길 장*녀 장*두 장*길	***세무서	부산광역시 북구	임류	지분 34분의6 지분 34분의1 지분 34분의4 지분 34분의4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창원시 사파정동 상남	장*규 장*숙	**농림부종합 박*규	창선면 수산리 고현면 남치리	가암류 1건 가암류 1건	지분 34분의4 지분 34분의1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부산시 북구 금곡동	장*삼 장*숙				지분 34분의4 지분 34분의4
18	창선면 오룡리	996-7	답	510	22	군포시 산본동	정*화				
19	창선면 오룡리	996-75	답	892	70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인				
20	창선면 오룡리	996-6	답	1,574	782	전라북도 군산시 내운동	최*숙				
21	창선면 오룡리	996-82	답	2,442	875	남해군 창선면 오룡리	김*삼	**농림부종합	창선면 수산리	근저당	
22	창선면 오룡리	996-68	답	1,008	134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최*경				
23	창선면 오룡리	996-4	답	1,223	850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정*근				
24	창선면 오룡리	996-15	답	684	5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박*준				
25	창선면 오룡리	996-3	답	1,889	89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박*준				
26	창선면 오룡리	996-16	답	1,040	4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남				
27	창선면 오룡리	996-106	답	182	22		경상남도				
합 계				108,028	17,246						

남해군 공고 제2017 - 534호

### 『부윤천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부윤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2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16.1 ~ 2018.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부윤천 정비공사』	경남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281-21번지 외 26필지 일원	L=783m 교량설치 1개소	남해군청/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열람기간 : 2017. 5. 22.~2017. 6. 5.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7. 5. 22.~2017. 6. 5.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55-860-32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윤천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서

사업명	부윤천 정비공사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편 입 용 지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총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명칭(성명)	주소	관리내용		
1	창선면 오룡리	1281-21	대	20	20	남해군 창선면 오룡리	김*관					
2	창선면 오룡리	1281-1	전	740	8	남해군 창선면 오룡리	김*우					
3	창선면 오룡리	1343	구	14,151	5,857	국(농림축산식품부)						
4	창선면 오룡리	1281-14	답	1,869	27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김*일					지분 2356분의 2007
5	창선면 오룡리	1281-15	답	2,328	12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박*영					지분 2356분의 349
6	창선면 오룡리	1281-29	답	1,130	367	경상남도 사천시 임내길	정*천					
7	창선면 오룡리	1281-34	답	339	76	인천 남동구 구월동	정*진					
8	창선면 오룡리	996-105	답	194	91		경상남도					
9	창선면 오룡리	996-2	답	793	6		경상남도					
10	창선면 수산리	55-2	염	60,988	1,526	남해군 창선면 상족리	학교법인**학원					
11	창선면 수산리	55-73	염	942	683	남해군 창선면 상족리	학교법인**학원					
12	창선면 수산리	55-72	답	1,729	684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호					
13	창선면 수산리	550	구	5,940	1,442	국(농림축산식품부)						
14	창선면 수산리	55-67	답	1,785	66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장*자					
15	창선면 수산리	55-66	답	1,798	571	남해군 창선면 상족리	학교법인**학원					
16	창선면 수산리	55-61	답	1,144	26	서울 도봉구 빈동	한*옥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김*선					지분 34분의6

부 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명칭(성명)	주 소	권리내용		
17	창선면 오룡리	996-8	답	694	5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장*길				지분 34분의6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장*녀				지분 34분의1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장*두	**세무서	부산광역시 북구	압류	지분 34분의4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장*길				지분 34분의4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장*규	**농업협동조합 박*규	창선면 수산리 고현면 남지리	가압류 1건 가압류 1건	지분 34분의4
						창원시 사파정동 상남	장*숙				지분 34분의1
18	창선면 오룡리	996-7	답	510	22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장*삼				지분 34분의4
						부산시 북구 금곡동	장*숙				지분 34분의4
19	창선면 오룡리	996-75	답	892	704	군포시 신본동	정*화				
20	창선면 오룡리	996-6	답	1,574	78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인				
21	창선면 오룡리	996-82	답	2,442	87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최*숙				
22	창선면 오룡리	996-68	답	1,008	134	남해군 창선면 오룡리	김*삼	**농업협동조합	창선면 수산리	근저당	
23	창선면 오룡리	996-4	답	1,223	850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진심로	최*경				
24	창선면 오룡리	996-15	답	684	5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정*근				
25	창선면 오룡리	996-3	답	1,889	89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박*준				
26	창선면 오룡리	996-16	답	1,040	4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박*준				
27	창선면 오룡리	996-106	답	182	2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남				
합 계				108,028	17,246						

남해군 공고 제2017 - 550호

###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27호(향교~신우보람)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소로2-27호 향교~향우보람) 개설공사
- 2. 출입구간 :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72-2번지 외 29필지(붙임 참조)
- 3. 출입기간 : 2017. 5. 24. ~ 사업 종료시까지
-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
-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055-860-3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입토지조서 1부. 끝.

# 출입토지면적집계표

남해군 남해읍 팍평리, 아산리								
사 유 지	단표			단표				
	전	145		전				
	대	1,191		대	81			
	구			구	거			
	도			도	로	491		
	임			임	야			
	증	45		증				
	소	1,381		소	계	572		
합				구 유 지				1,953

출 입 토 지 조 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sup>2</sup> )	소 주		유 소	자		비 고
	군	읍		리	본		지	대		장	현	
1	남해	남해	북변	572	2	대	도	91	32			남해군
2			"	572	1	대	대	212	25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6		남향교
3			"	573	2	증	증	235	45		남해군향교재단	
4			"	569	2	대	대	898	47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69		김*언
5			"	573	7	대	대	304	144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73-7		이*규
6			"	573	6	대	대	156	98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19-23		이*남
7			"	622	12	도	종	118	3		국(기획재정부)	
8			"	622	13	대	대	18	18		국(기획재정부)	
9			"	587	1	대	대	66	66	진주시 평거동 들말흥한타운 104동 204호		정*재
10			"	573	13	대	대	6	6		남해군	
11			"	573	5	대	대	7	7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7-1		정*주
12			"	574		대	대	93	25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87-3		박*례
13			"	622	14	대	대	23	10		국(기획재정부)	
14			"	585	21	대	대	83	41		남해군향교재단	
15			"	585	20	대	대	456	62		남해군향교재단	
16			"	585	19	대	대	208	208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산 34		박*명
17			"	584	2	대	대	91	35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산 34		박*명
18			"	584	5	대	대	36	15		남해군	
19			"	584	1	대	대	172	17	인천 중구 흰바위로 14, 207동 704호		정*심
20			"	585	18	전	전	238	145		남해군향교재단	
21	남해	남해	북변	585	17	대	대	238	14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0번길 67		이*규

남 해 군 이 민 표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본	번 지	지 장		목	지 적 (m <sup>2</sup> )		주 소	자		비 고
	군	읍 리			대	현 재		총 지 적	편 입		성 명	소	
22		"	585	16	대	대	대	311	82		남해군향교재산		
23		"	585	15	대	대	대	60	60		남해군향교재산		
24		"	585	13	대	대	대	489	9		남해군향교재산		
25		"	585	14	대	대	잡	116	116		남해군향교재산		
26		"	622		도	도	도	400	115		국(기획재정부)		
27		"	585	24	도	도	도	126	16		남해군		
28	남해	남해 아산	1418		도	도	도	681	98		국(국토교통부)		
29		"	189	2	도	도	도	647	259		남해군		
30		"	189	4	대	대	대	201	8	서울 성동구 행당동 128-860	박*철		
계									1,953				

남해군 공고 제2017 - 579호

##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규제지수 실적제고 및 조례개정을 통한 명확한 법령해석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담금 납부기한 명확히 개정

- 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한다.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해군수(참조 건설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 연락처 : 전화055-860-3315, 팩스055-860-3708, e-mail : n0113125@korea.kr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를 “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 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④ 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_____            _____            _____            --.</p>

관계 법령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중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를 “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④ 부담금은 착공 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_____ _____ _____.

관계 법령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583호

##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9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과도한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지나치게 낮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2조)다량배출사업자 기준 완화(250㎡이상 → 300㎡이상)
- 나. (제9조)수수료 납부필증 가격책정
- 다. (제12조)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개정
- 라.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시기 변경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 연락처 : 전화055-860-3263, 팩스860-3707,  
e-mail : [hellosejong@korea.kr](mailto:hellosejong@korea.kr)

# 의 견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하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차류, 아이스크림류, 주류 등을 판매하는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남해군수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또는 사업자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 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판매가격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배출할 때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납부필증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 세대별로 배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종류 및 규격, 색상,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변조 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 「남해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규정을 준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소는 「남해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요령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별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법 제13조, 제13조의2,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할 것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등 신고사항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설치승인(신고 포함)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제9조제3항 관련)

[단위:원]

규 격	용 도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5 ℓ (단독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110	10	120
20 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558	42	600
120 ℓ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2,820	180	3,000
120 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3,384	216	3,600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사양(제9조제3항 관련)

[단위:원]

종 류	색 상	규 격	재 질	비 고
5 l (단독주택용)	분홍색	가로14.5cm × 세로3cm	유포지	
20 l (업소용)	초록색			
120 l (공동주택용)	파란색			
120 l (업소용)	주황색			

[별표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제12조 관련)

가. 전용수거용기 사용지역

○ 남해읍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단, 북변1·2, 유림1·2, 서변, 남산, 남변, 죽산, 봉전, 신기마을에 한함

○ 2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폐기물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나. 기타지역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쓰레기</li> <li>-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종량제봉투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li> <li>-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li> </ul>

## [관 련 법 령]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

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
4. 폐기물처리업자
-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제38조(보고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3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한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

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가 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장치 등을 갖추는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약품·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

· 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1의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와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의3. 제1호 및 제1호의2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자체 재활용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1의4.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별지 제37호서식의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2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수입폐기물 관리대장

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38호서식의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39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2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마. 폐기물 종합처분업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44호서식의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3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전용용기 생산·판매 및 품질검사 관리대장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0호서식의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폐기물 재활용시

설 운영·관리대장

5.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46호서식의 제품제조·수입 관리대장

나. 별지 제47호서식의 폐기물 회수·처리 관리대장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한 자: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

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란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產地流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3. "경매사"(競賣士)란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농수산물 전자거래"란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584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남 해 군 수

1. 목 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 붕괴·낙하 등으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있어 이 지역을 정비·관리하고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 지정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변경 지정 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7. 5. 30 ~ 6. 19(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7. 5. 30 ~ 6. 19(20일간)

4.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예고대상)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남해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60-3727)

다. 제출기한 : 2017년 6월 19일

라. 보내실 곳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마. 문 의 처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055)860-3293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 대상지

구분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 정 사유
			유형	등급	면적(m <sup>2</sup> )	
당초	북남치	고현면 남치리 158번지 일원 (산123번지)	붕괴위험	C	2,0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변경	북남치	고현면 남치리 158번지 일원 (산123번지)	붕괴위험	D	2,0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해위험도 평가에 따른 등급 조정

8.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 추후 사업계획 수립시 낙석방지책 등 급경사지 보수·보강 및 정비계획 수립

※ 사업 시기는 예산(국·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9.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 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야 함.

붙임 1.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각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 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고시 행정예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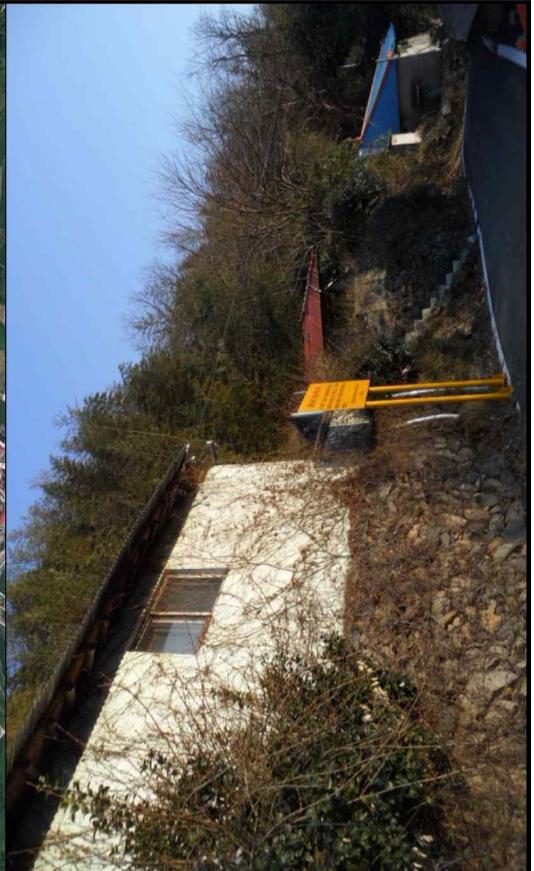
북남치지구 전체 위치도



북남치지구 위치 및 현황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158번지 일원)



위 성 위 치 도



현 황 도

**알 림**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 - 10호

**보 상 계 획 공 고**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편입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9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 업 시 행 자
북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6-3~남변리 118-1	생태하천정비 및 인공습지 조성 L=0.57km	2017. 9. ~ 2019. 12.	남해군수

2. 보상내역 : 토지 31필지/45,890㎡ 및 그 토지상의 지상물건과 권리 등 일체 (붙임 토지조서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17. 6월 이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개별 통지함)

나. 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이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 보상금 공탁 및 수용

#### 4. 보상계획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7. 5. 19. ~ 2017. 6. 4.(16일간)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 상하수도사업소(☎055-860-3334)

경상남도 남해군 홈페이지

다. 열람 및 이의신청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5. 보상금 지급 방법

-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등기이전 후 현금으로 지급하며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별도 통지합니다.

#### 6. 기타 사항

- 보상계획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수취거부 등으로 개별 통보를 받지 못하는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계획입니다.

붙임 : 편입토지 내역 1부 “끝”

토 지 세 목 조 서(전체)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권 자		비 고
	군	면	리					토 지 대 장		
	(시)	(읍)	(동)					성 명	주 소	
1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1	답	863	863	최○봉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2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9	답	614	614	감○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5	답	2,225	2,225	옥○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4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8	답	669	669	남해충열사묘총회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5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4	답	2,109	2,109	조○민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6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8-1	답	918	918	남해충열사묘총회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7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	답	2,238	2,238	김○길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8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6	답	1,319	1,319	하○일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9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4-2	답	1,201	1,201	이○호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10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7	답	2,000	2,000	최○욱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11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5	답	1,385	1,385	이○조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12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4-1	답	1,290	1,290	정○지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3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3	답	1,355	1,355	김○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42	답	1,018	1,018	이○호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15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6-3	답	1,931.0	496	장○수	서울 송파구 방이동	
16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0	답	451.0	451	이○래	부산 해운대구 좌동	
17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58-1	답	1,094.0	477	신○철 외 1명	남해읍 화전로	
18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6	답	3,151.0	225	김○숙 외 1명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9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7	창	585.0	172	김○우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20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7-3	답	642.0	131	김○우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21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7-1	답	2,280.0	144	조○안	부산 남구 용호동	
22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1	답	1,940.0	709	이○신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23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18-6	답	9.0	8	이○신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24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36-2	답	1,725.0	31	김○애 외 1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5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4	답	537.0	203	하○임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2-4	전	3,512.0	12	정○오 외 7명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27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2-1	임	8,766.0	213	감○주 외 2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28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2-9	천	15.0	15	감○주 외 2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29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2-8	천	3.0	3	감○주 외 2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30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2-7	천	14.0	14	감○주 외 2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31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143-2	답	31.0	31	감○주 외 2	남해군 남해읍 남변동	
계						45,890.0	22,539.0			